

“인터넷 책계재 출판사 맘대로 못해”... 저작권 침해 인정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영어교재 저자인 문모씨(29)가 “교재 내용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려 재산상손해를 입혔다”며 출판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사는 문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D사가 문씨와 책 출판계약을 한 뒤 교재 내용을 허락없이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인터넷 회원들이 이를 읽거나 전송받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는 책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그 내용을올리는 것은 출판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데다 저작권자를 출판사로 표시하기까지 했으므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문씨는 96년 4월 D사와 토의 영어교재 국내 독점 출판계약을 했으나 회사측이 97년 2월부터 3개월간 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하자 소송을냈다.

출처 동아일보

독도 관련 도메인 놓고 한일 네티즌 ‘총성없는 전쟁’..한국 완승

독도관련 “낙장 도메인” 확보를 둘러싸고 한일 네티즌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총성없는 전쟁”을 벌였다.

낙장 도메인이란 도메인 등록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비를 납부하지않아 소유주가 없어진 도메인을 말한다.

이날 네티즌들의 목표물은 “독도닷컴”(tokdo.net)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이름)닷컴(takeshima.net)”.

이들 도메인이 최근 국제 도메인 등록기관인 네트 워크솔루션즈에 의해 낙장 도메인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국의 도메인업체와 네티즌들은 이날 밤 8시30분경 매물이 뜨기 무섭게 도메인 확보

에 나섰다.

결과는 도메인등록 전문업체인 “에스도메인닷컴(yesdomain.com)”과 대전의 한 네티즌이 각각 “tokdo.net”과 “takeshima.net”을 확보해 한국의 완승으로 끝났다.

출처 한국경제

“램버스 특허소송” 미법원 예비판정

독일 인피니언이 미국 램버스와의 싱크로너스(S)D램 및 더블데이터레이트(DDR) SD램에 대한 특허 소송 예비 판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일한 안전으로 램버스사와 특허소송 중인 현대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인피니언과 램버스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지방법원 로버트 페인 판사는 예비 판정에서, 양사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특허 권리 범위에 대해 인피니언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였다.

리치몬드 지방법원의 이번 예비 판결은 현대전자·마이크론·인피니언 등 3개 D램 업체가 램버스와 벌이고 있는 소송의 첫 번째 사례인 데다, 사실상 램버스가 패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3개 D램 업체가 크게 고무돼 있는 상황이다.

리치몬드 법원의 예비 판결내용이 보도되자 램버스주식이 폭락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는 램버스의 패소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자의 특허담당 임원은 “이번 예비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며, 램버스는 기업의 사활을 걸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좀 더 지켜본 후 램버스와 관계정립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 예비판결 내용 무얼 담고 있나 리치몬드 지방법원의 예비판결 내용은 램버스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리 범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램버스가 주장하는 SD램과 DDR SD램의 특허는 램버스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램버스의 패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판사가 예비판결을 내리는 것은 배심원들에게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해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배심원들은 판사의 예비판결을 근거로 판사에게 소송에 관한 평결(답신)을 하게 돼 있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판사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게 현대전자 특허담당자의 설명이다.

물론 램버스의 적극적인 로비로 일부 배심원들이 판사의 예비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지만 최종 결정은 판사의 몫이다.

- ▲ 현대전자 어떤 혜택 받나 현대는 우선 오는 7-8월 경 독일, 내년 미국에서 예정돼 있는 램버스와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법원에 따라 판결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리치몬드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 해당 판사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현대전자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예비 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질 경우, 현대전자는 램버스에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돼 산술적으로 연간 수백 억원의 비용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램버스 측은 현재 D램업체에 SD램은 전체 판매액의 약 1%, DDR SD램은 약 3.5%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어, 승소할 경우 현대전자는 올 D램 예상 매출액 6조여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600여억원의 비용지출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 ▲ 램버스 완전 패소하나 램버스는 이번 특허소송을 사활을 걸고 벌이고 있어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설비 없이 반도체 특허기술만으로 사업을 하

고 있는 램버스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완전 패소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적극적인 로비활동으로 최종 판정을 가급적 미룰 가능성이 높다.

또 지방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고등법원, 연방법원에 잇달아 항소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은 어느 한쪽이 완전 패소하기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대전자·마이크론·인피니언 등 3사는 재판을 계속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도 램버스와 물밑 접촉, 특허료를 재협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전자의 한 특허담당 임원은 "이번 소송을 일단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법적대응을 철저히 하겠지만,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이기는 형태로 결말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램버스가 매력적인 조건으로 특허료를 재조정해 올 경우 받아 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이미 램버스와 SD램, DDR SD램에 대해 특허계약을 맺은 삼성전자·미쓰비시전기·NEC·도시바·히타치 등도 특허료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리치몬드 법원의 이번 예비 판결은 램버스에게는 큰 위협으로, D램업체에는 큰 짐을 덜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엠피맨, MP3 특허분쟁 수면 부상

엠피맨닷컴(대표 문광수)이 최근 MP3 플레이어 업체에 특허사용료 부과를 위한 생산자료와 매출자료를 담당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MP3플레이어 특허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디지털웨이·유니텍전자·현원·제이씨현시스템 등 엠피맨닷컴으로부터 매출자료요청 공문을 받은 업체들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아직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들도 본사특허팀을 가동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중소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KPAC의 대표격인 디지털웨이(www.digitalway.co.kr 대표 우중구)는 조만간 담당변리사를 선임, KPAC 회원사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웨이 우중구사장은 “특허청의 특허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선행기술 저촉 여부 등의 대응을 서두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이의신청을 위한 반론근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유니텍전자(대표 백승혁)는 자사 MP3 플레이어 초기모델인 로미II이 ‘플래시메모리 온 보드’ 모델이 아니라 특허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로미II와 줄리 모델과 관련해 디지털웨이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엠피맨닷컴의 자료요청에는 전혀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삼성전자(대표 윤중용)는 엠피맨측의 특허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LG전자(대표 구자홍)측 MP3 플레이어 특허문제 전담팀을 연구소 특허팀에서 본사 특허팀으로 이관해 공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양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행사를 통해 엠피맨닷컴의 특허권 행사에 맞대응할 예정이다.

외국산 MP3 CD 플레이어를 수입해온 제이씨현시스템(www.jchyun.co.kr 대표 차현배)은 MP3 CDP는 엠피맨닷컴의 특허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이며 만일의 경우에도 계열 창투사인 벤처게이트가 엠피맨닷컴의 주요 주주라 협상에 문제가 없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한편 국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엠피맨닷컴과 공동으로 특허권을 출원한 미국의 소닉블루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 이미 일본에서는 특허 출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도 14개월이면 가부가 결정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3년이나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특허 출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 아니냐”며 “소닉블루사가 해외에서 특허확대에 자신이 없자 국내 특허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e-월드] 감정기호 :- (특허 해프닝)

감정기호(emoticon)까지 특허를 내준 미 특허상표국(PTO)의 무분별한 특허남용이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특허를 받은 ‘:- (‘는 e-메일 등에서 울적함을 나타내는 감정기호로 블랙유머 제공사이트 디스페어닷컴(www.dispair.com)을 운영하는 E.L.커스턴이 지난해 장난 삼아 특허 신청한 것을 PTO가 덜컥 받아들인 것이 기호를 무단 사용할 경우 불법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커스턴 사장은 “아마존의 ‘원클릭’ 주문시스템 등 불필요한 지적재산권을 남발하는 세태를 꼬집기 위해 장난으로 특허신청을 했는데 PTO의 관료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지 새삼 확인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번 사태는 PTO의 판단능력 미비와 과도한 특허권 남용이 부른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PTO는 IBM에 2,886개, NEC에 2,020개, 캐논에 1,890개, 삼성전자에 1,441개, 루슨트 테크놀로지스에 1,411개의 특허를 내주는 등 특허를 남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출처 서울경제

‘한국통신’ 10년 상표분쟁 종지부

10년여를 끌어온 국내 최대의 상표분쟁 사건이 드디어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됐다.

코스닥등록기업인 한국통신(KORCOM)은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코콤(KOCOM)”으로 변경하

고 한국전기통신공사(KT)와 벌여온 상표분쟁을 최종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6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한국통신”이라는 상호를 써온 코콤은 90년 이후 “한국통신”을 약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상호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코콤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기술협력을 맺는 조건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상호를 양보했었지만 이번 상호변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나 증권 투자자도 더이상 두개의 ‘한국통신’사이에서 혼란을 빚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경제

인터넷 동영상 실시간 녹화 SW 저작권 침해논란

인터넷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는 ‘인터넷판VCR’가 등장해 저작권 침해논란을 빚고 있다.

인터넷 솔루션회사인 혼넷(대표 김범훈·www.hoonnet.co.kr)은 동영상 녹화 소프트웨어 ‘하이넷 레코드’를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 받도록 하고있다.

유료 사이트에서 상영되는 인터넷 영화나 방송은 녹화기능이 없어 다시보려면 매번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녹화를 해두었다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다.

혼넷은 이와 함께 수 만개의 음악 뮤직비디오 영화 등을 링크해 주는자료실을 운영하고 이용자끼리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혼넷 이용자들이 늘어날 경우 유료 인터넷 방송국들은 치명상을 입을것으로 보인다.

한 명이 유료 영화나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순식간에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방송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

음악전문 케이블TV인 뮤직네트워크는 “하이넷 레코드와 무단링크의 불법성을 확인했으며 소송 제기를 준비중”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혼넷에 보냈다.

혼넷 김범훈 사장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확인했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의정부시, “의정부 예술의 전당” 명칭 시비안돼

경기도 의정부시는 개관할 예술의 전당 명칭 사용에는 상표법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은 상표법상의 상표개념이 아닌 업무표장 개념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상표개념에 대한 의장등록상표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시(市)는 또 외관·호칭·관념 중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상표(명칭) 유사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특허청의 상표 개념이나 대법원의 유사상표에 대한 판례 등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서울 ‘예술의 전당’은 구분이 확실해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확실한 근거 마련을 고문 변호사에게 유사상표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 누가 이런 명칭을 지었나요?”라는 글을 통해 ‘의정부예술의 전당’ 명칭을 바꿀 것을 요구하자 대책을 마련해 왔다.

출처 연합뉴스



“사업아이디어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부장판사)는 김모(34)씨가 “이메일로 보낸 사업 아이디어를 허락없이 채택, 사용했다”며(주)한국통신프리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통신프리텔측이 휴대폰 부가서비스와 관련, 원고의아이디어를 채택해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외에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 감정 자체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와 별도의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사용료등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9년 11월 휴대폰 사용자가 원하는 주식종목과 가격변동폭을 단말기로등록하면 해당종목의 주식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주식시세 통지서비스 아이디어를 이메일로 한국통신프리텔측에 제안했다 실제로 채택돼 사업화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출처 연합뉴스

한법 저작권 소송 휘말려

한글과컴퓨터가 솔루션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문서를 공유하고 배포하는 PDF솔루션 개발업체인 JPD인터넷은 한글과컴퓨터의 PDF 솔루션 ‘EZ PDF’가 자사의 PDF 솔루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PD인터넷은 이에 따라 이날 서울지법에 한글과컴퓨터를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특허권 침해 등을 사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JPD인터넷에 따르면 지난 99년 12월부터 JPD인터넷의 ‘한Q PDF’의 유통을 맡는총판이었던 한글과컴퓨터는 지난해 이 솔루션과 매우 유사한 PDF솔

루션인 EZ PDF를자체 개발했다는 이유로 총판계약을 파기하고 자체 영업에 나섰다.

JPD측은 자사와의 총판계약을 통해 알게 된 각종 기술정보 등을 무단 도용해 한컴이 자체 개발품이라고 하는 EZ PDF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컴측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한Q PDF를 판매했으나 제품의 완성도의 문제로 유니다스사와 계약을 체결, EZ PDF 솔루션을 대체 판매하고 있다”며 “한Q PDF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을 사용해 개발된 것으로 품질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EZ PDF가 훨씬 우수한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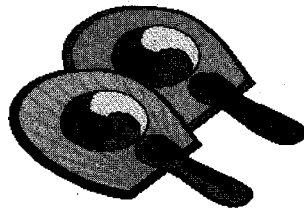
한컴은 “특히 PDF 솔루션은 범용성 소프트웨어로서 특허권이 적용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PDF 솔루션이 이미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저작권의 문제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한컴은 “이번 일로 공인기관에 두 제품의 소스를 비교해서 도용 여부를 확인할것이며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사유로 JPD인터넷을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DF(Portable Document Format)란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자문서의 한 형식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문서를 공유하고 배포할 수 있어 인터넷시대의 문서 교환에 가장 적합한 파일 포맷으로 각광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발행 2001 / 5-6



**【판례번호】 무효(의장) 2000.10.24. 대법원
98후1358 판결**

【판시사항】

【DD680】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종의 물품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갑 제2, 3호증(각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이다.

【DD6803】갑 제3호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변창기는 소외 동방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위 회사와 별도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판매 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없으므로 심판청구인 변창기는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DD6805】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개된 1993. 1. 14.자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인 갑 제23호증에 첨부된 도 1과 도 4의 각 도면에는 가운데가 부풀고 동심원이 그려진 둥근 방패형태의 열판이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서는 변론 등을 열어 당사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 열판에 표현된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원심파기).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한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참가인】 주식회사 노비타 (변경 전 상호 : 한일가전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종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원심결】 특허청 1998. 2. 28.자 96항당44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본다.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의장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판매 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종의 물품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갑 제2, 3호증(각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변창기는 소외 동방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위 회사와 별도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판매 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없으므로 심판청구인 변창기는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구 의장법 제68조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판청구인 김한조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1호증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할 도면이 없고, 갑 제23호증은 기술도면에 불과하며,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에 나타난 밥통의 사진에는 전기밥솥용 열판의 전체적인 형상이 없어 이들 증거들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의 대비가 곤란하며, 갑 제10호증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이고, 갑 제17호증의 열판 사진은 그 촬영일자를 알 수 없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공지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에 게재된 열판은 이 사건 등

록의장과 형상, 모양이 상이하고, 갑 제15호증에는 모델번호 NMD-182G형과 NMD-185M형의 전기밥솥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16호증에서는 동 모델의 사용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에는 전기밥솥의 사진과 함께 그 모델명을 기재하고 있으나 밥솥 내부의 사진만으로 그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부족은 경험치에 의하여 보충하여도 그 의장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 의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갑 제20호증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이던 강자희가 1979. 4. 2.부터 삼일금속공업사라는 상호로 밥솥, 열판, 알루미늄주물 등의 제조,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업자등록증이고, 갑 제15호증은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가 1990. 8. 30. 원심 참가인인 주식회사 노비타(이하 '노비타'라 한다)에게 모델번호 NMD-182G형과 HMD-185M형의 전기밥솥을 주문한 주문서이며, 갑 제16호증은 노비타가 1990년 12월부터 생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한 모델번호 NMD-182G형과 NMD-185M형의 전기밥솥에 다같이 삼일금속공업사에서 생산, 납품한 열판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확인서이고, 갑 제21호증은 위 삼일금속공업사에서 1991년 9월 노비타에 모델번호 NMD-185M형의 열판을 납품하였음을 나타내는 거래명세서이며, 갑 제18호증은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1991년 7월에 발간한 '소비자시대' 책자로서 삼성전자가 생산하여 시판중인 모델번호 NMD-182G형과 NMD-185M형의 전기밥솥에 관한 기사와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갑 제24호증의 1, 2, 3은 노비타가 1985. 1. 9. 일본의 상인마호빙 주식회사로부터 전기밥솥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나타내는 신고서들인데, 이들 증거들은 변론의 전취지 등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은 갑 제9호증이 도면 출도대장으로서 노비타가 일본의 상인 마호빙 주식회사로부터 전수받은 열판에 대한 설계

도면을 삼일금속공업사에게 배포한 근거서류,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은 모델번호 NMD-182G형 및 모델번호 NMD-185M형의 전기밥솥 열판 사진, 갑 제17호증은 노비타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한 열판의 사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 열판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며, 심판청구인이 원심에서 변론을 열어 이를 입증할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론 등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위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 마저 변론 등을 통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참가인 노비타는 1985. 1. 9. 일본의 상인마호빙 주식회사로부터 전기밥솥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토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이던 강자희가 운영하는 삼일금속공업사에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고 주문, 납품받은 열판을 사용하여 1990년 12월경부터 삼성전자에 모델번호 NMD-182G형과 NMD-185M형의 전기밥솥을 납품하였으며 이들 모델의 전기밥솥이 그 무렵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의 사진들에 나타난 열판의 의장이 그 무렵 이미 공연히 실시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개된 1993. 1. 14.자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인 갑 제23호증에 첨부된 도1과 도4의 각 도면에는 가운데가 부풀고 동심원이 그려진 둥근 방패형태의 열판이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의 변론 등을 열어 당사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 열판에 표현된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거들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 판단될 도면과 형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이 신규성 및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심판청구인 김한조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판례번호】취소(상표) 2000.09.08. 대법원 98후3057, 98후3064, 98후3071, 98후3088, 98후3095, 98후3101, 98후3118 판결

【판시사항】

【TD0004】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은 특정인의 속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상표라는 표장의 식별표식으로서 물(物)에 대한 처분이다(= 대물적 처분)

【TD3907】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TD3712】구 상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권영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최종석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2. 10. 선고 98허6629, 6636, 6643, 6650, 6667, 6674, 6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히포교역(이하 ‘히포교역’이라 한다)은 1995. 12. 13. 주식회사 국광상사(이하 ‘국광상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국광상사가 위 계약일로부터 3년간 히포교역이 상표권자이고 지정상품이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스포츠셔츠, 티셔츠” 등인 상표등록번호 제321159호 및 제321161호, 지정상품이 같은 제45류에 속하는 “스포츠셔츠, 포올로셔츠” 등인 상표등록번호 제299165호, 제299193호, 제299194호, 제299196호 및 제299197호의 각 상표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HIPPO”, “히포” 및 하마 도형 일체를 티셔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국광상사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티셔츠에 부착하여 6개월 이상 판매하여 온 사실, 그 동안 히포교역은 국광상사에게 위 사용을 허락한 상표들에 대하여 전용 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및 1995. 12.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상표권압류 및 환가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6. 9. 4.경 이 사건 등록상표권들을 경락받아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국광상사는 상표권자인 히포교역의 대표이사 도명호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여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이 국광상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부착하여 사용한 티셔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



의 각 지정상품인 스포츠셔츠와 유사한 상품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였던 히포교역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인 국광상사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그 각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적어도 위 상표사용계약일인 1995. 12. 13.경부터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것이며,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은 특정인의 속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상표라는 표장의 식별표식으로서 물(物)에 대한 처분이고, 또 사용권별 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 할 것이니 이에 해당되는 행위의 책임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구 상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우선 기록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 상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티셔츠에 대하여만 사용허락이 있었음에도 다른 지정상품을 포함하는 상표등록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구 상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범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압류 및 환가명령은 1995. 12. 14.에 발령되어 같은 해 12월 20일에 그 기입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위 상표사용계약의 체결일인 1995. 12. 13. 이전에 상표권 가압류 기입등록이 마쳐지고 같은 해 12월 14일에 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가압류가 위 상표사용계약체결 이전에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가압류 기입등록이 마쳐진 이후에 한 전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발특 2001 / 56